

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

고시 제 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수계명	소하천명	발생 년월일	폐천부지등			
			위치 (지번 및 지목)	면적(㎡)	발생 사유	보전·처분 계획

열람서류: 폐천부지등 위치도(축척 1,000분의 1~6,000분의 1 지적도)